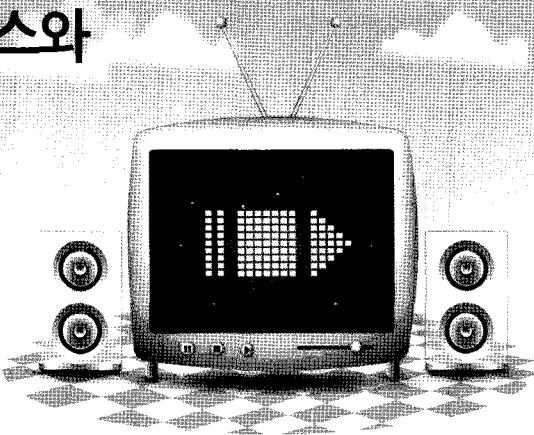


스마트폰 위치정보 서비스와 프라이버시 이슈



이민영 | 가톨릭대학교 법학부 교수

1. 머리말

개인정보는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정보매체 및 정보기록에 수록될 수 있으며, 그 자체로 어떠한 의미를 보유하면서도 달리 일정한 의도나 고안에 의해 창작되는 정보내용, 즉 콘텐츠와도 구별된다. 다시 말하자면, 정보 그 자체로서 개인에 관한 것이며,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이 개인정보이다. 그 가운데에서도 해당 정보로 인식되는 정보주체의 동적 거동으로 특정 시점에서의 존재좌표로 식별될 수 있는 개인정보인 위치정보(location data)가 존재한다. 이와 같이 위치정보는 기술적 의미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신의 공간적 위치를 변경하는 정보주체가 지구 좌표계상에서 어떤 지점을 점유하는 경우 그 좌표계상의 지리적 위치에 관한 정보를 일컫는 것인 바, 유럽연합의 프라이버시·전자통신에 관한 지침(Directive 2002/58/EC 12 July 2002)에서는 ‘대중적 가용성이 있는 전자통신서비스 이용자 단말장치의 지리적 위치로 전자통신망에 표시되어지는 처리정보’로 이를 정의하고 있으며(제2조 제c호), 위치정보가 기록되어지는 일정 시점에서 단말장

치가 위치한 network cell의 식별, 위치정보의 정확도 및 행선지의 방향에 있어 이용자 단말장치의 위도·경도 및 고도를 지칭한다. 그리고 이 지침은 개인의 위치정보는 익명 처리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처리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제9조제1항).

이에 대하여는 2005년 1월 27일 법률 제7372호로 제정되고 지난 3월 22일 법률 제10166호로 일부개정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한다)」이 규율하는 바, 이 법 제2조는 제1호에서 ‘위치정보라 함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화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는 ‘개인위치정보라 함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를 말한다.’라고 하여 개념을 구별하고 있다. 여하튼 위치정보법은 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에 관한 제15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위치정보의 수

집·이용 또는 제공에 관하여 제18조 및 제19조에서 법 정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때에는 행정 형벌을 부과하도록 별칙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사람의 눈을 피한다’는 의미의 라틴어인 *privatue*에서 유래하는 프라이버시의 사전적 의미는 ‘사생활에 대하여 타인의 눈길로부터 떨어져 있는 상태, 은거하는 장소나 은밀한 장소, 타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사적 비밀이 보장된 분위기, 타인에게 알려지기를 꺼리는 사사(私事) 혹은 사적인 친척관계나 친밀한 관계와 같이 은밀한 관계 등을 뜻한다.’고 기술되기도 하고, ‘사회·타인의 호기심 그리고 영향력으로부터 독립된 것으로써 규범적 요소를 포함한 개인적인 영역에 대한 접근의 배타적 통제권’으로 풀이될 수도 있다. 하지만 프라이버시의 개념은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개인의 사적 영역(personal space)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익 또는 권리’를 통칭하는 다차원적 개념으로서, 보통법(common law)의 전형적인 발전과정을 거쳐 성립된 미국에서조차도 그 다의성으로 인해 그 의미에 통일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방헌법은 명시적으로 프라이버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지만 이에 관한 최초의 언급이 1888년 Thomas Cooley 판사의 저서에서 신체의 안전에 속하는 여러 권리 가운데 하나인 인격의 불가침성(personal immunity)으로서 ‘홀로 있을 권리(right to be let alone)’로 나타났으며, 이후 하버드 로스쿨 교수 Charles Fried는 1968년 발표한 「Privacy」에서 프라이버시란 우리들에 관한 정보의 부재(不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에 관한 정보를 우리 스스로가 통제(統制)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자기에 관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공개할 수 있을 때 타인과의 친밀감이 형성되므로 자신의 정보에 대한 통제를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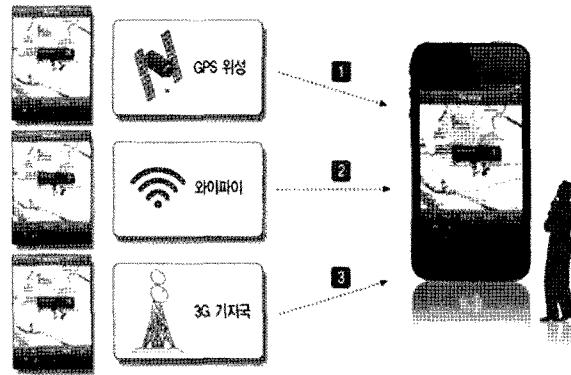
적 요소로 파악한 데 기인한 것이다.

특히 1960년대 후반부터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에 의한 프라이버시의 위험을 경고하여 왔으며 그 개념을 정보사회에서 자기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재정립하기 시작하였는 바, 이를 정보프라이버시 (informational privacy)라고 부를 수 있겠다. 정보프라이버시란 정보주체가 보유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배타적 통제권을 의미하는 바, 이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자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인가를 자유로이 결정할 권리이 인간의 존중과 인격의 자유로운 전개에 해당하여 법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파악하여 1983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인구조사판결 (BVerfGE 65, 1)에서 인정된 정보자기결정권(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과 동일한 개념이라 볼 것이다. 환언하자면, 이들 모두 자신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서 개인정보에 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설정한 것이고 이로써 자기 정보에 대하여 정보주체 스스로가 갖는 자율적 결정 권능이 도출된다고 보지만 그 용례가 다를 뿐이라는 것이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5년 5월 26일 실시한 2004 헌마190결정에서 거론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역시 ‘informational privacy’ 또는 ‘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과 그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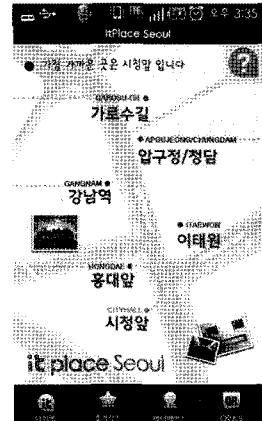
■ ■ ■ 2. 스마트폰 위치정보보호

이동통신망이나 위성항법장치(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등을 통해 얻은 위치정보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시스템인 위치기반서비스(LBS: Location Based Service)를 기축으로 정보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제정된 위치정보법은 이제 스마트폰 400만 시대에서 진화된 휴대용 단말장치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직

스마트폰의 위치측위 방법



[그림 1] 디지털타임스 2010년 9월 30일자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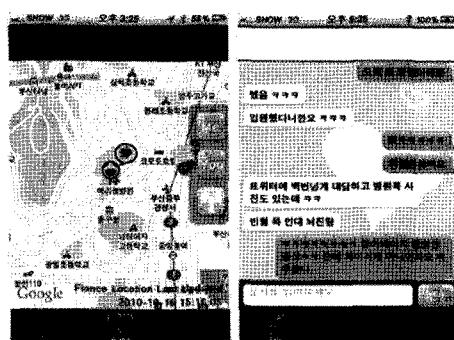


[그림 2] 잇플레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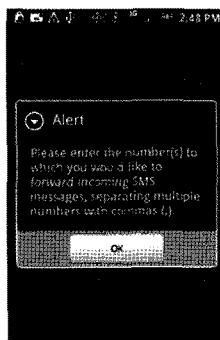
면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정보주체인 개인의 동의를 획득하지 않는 한 해당 서비스는 법적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스마트폰에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GPS, 와이파이(Wi-Fi) AP, 3G 기지국 등에서 위치정보를 제공받도록 설계되어 있고, 특히 GPS로 위치측정이 불가능한 도심지나 실내지역의 경우는 WLAN 측위기술을 활용해 정보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등 GPS, 와이파이 등을 통한 위치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정밀도가 크게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아이폰의 경우 ‘오빠 믿지?’라는 위치추적 어플로 논란이 있었고 문자메시지를 직접 훔쳐 볼 수 있는 ‘Secret SMS Replicator’라는 안드로이드 전용 앱이 등장해 사생활 침해 논란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그런데 여기서 동의라 함은 거래법적 관점에서 위 치정보 관련서비스의 이용계약 체결에 있어 해당 서비스제공자의 정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라 할 것이며, 해당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철회는 정보주체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인한 계약해지로 판 단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에 관한 자기결정 혹은 자기통제를 통하여 스스로 정보제공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논의 가치를 지닌다. 그렇기 때문에 무료 또는 유료로 배포되는 공개 프로그램에 들어있는 일종의 정보수집모듈의 통칭으로서 광고효과 모니터링을 위해 프로그램 사용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미리 설정된 특정 서버로 보냄으로써 외부에서 인터넷을 통해 특정 사용자



[그림 3] '오빠 믿지?' 실행 화면



[그림 4] ‘Secret SMS Replicator’ 실행 화면

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소프트웨어를 일컫는 스파이웨어(spyware)의 경우 무료 유틸리티(freeware) 혹은 공유 소프트웨어(shareware) 등을 내려 받는(downloading) 동안 무의식 중에 그 설치를 수락하게 되는 때에는 ‘표의자의 인식’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지 못함에 대한 과실과 확연한 상대방의 고의를 비교 형량하고 상대방인 표시수령자에게 ‘표의자의 인식’을 가로막은 데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므로 결국 은밀히 스파이웨어의 설치를 설정한 표시수령자가 악의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당해 의사표시는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취소될 수 있다고 새겨야 한다. 왜냐하면 이용자의 효과의사는 스파이웨어의 설치나 개인정보의 유출에 있지 않고, 특정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려는 데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설치된 스파이웨어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의 폐해를 설치 동의 의사표시의 취소가 보전해줄 수 있는 것은 없는 노릇이다. 취소 가능한 의사 표시라 할지라도 이미 수집·획득된 개인정보의 환원이 보호가치의 실익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는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유로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요망되며,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는 물각한 채[I Agree]에의 클릭이라는 ‘동의’ 자체만을 부각시키려는 시각은 현대 정보사회에서 인격의 존엄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보장기제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정당화 한다는 측면에서 다루어야 하는 것이다.

더욱이 위치정보법은 해당 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 획득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위치정보 관련사업에 대하여 진입규제를 설정하고 있다. 즉,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위치정보사업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

다. 그리고 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를 한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 허가 및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서비스제공자의 시장진입에 대하여 근본적이면서 강력하게 시장개입을 행하여 시장구조 그 자체를 결정하는 구조적 규제(structural regulation)로 설정된 것이라 하겠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지난해 국내 아이폰 출시를 앞두고 단말 제조업체인 애플코리아가 위치정보사업의 허가를 받은 데 이어 지난 4월 삼성전자와 국내외 포털인 구글과 NHN 등이 위치정보사업에 진출해 본격적인 경쟁을 펼치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림 5]

이미 언급된 ‘오빠 믿지?’ 나 ‘Secret SMS Replicator’에 따라 실행되는 위치기반서비스의 경우에도 해당 서비스사업자의 공법행위(公法行爲)인 신고가 전제되어야 하고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②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위치정보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③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고자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의 내용, ④ 위치정보 이용·제공 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⑤ 그 밖에 개

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치정보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도록 위치정보법 제19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치정보사업자가 허가를 신청할 당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위치정보법 제9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행하면서 개인위치정보 수집사업을 겸할 경우 위치정보사업에 대한 진입규제로서 허가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불분명한 규율일 따름이고 이 경우 위치정보법 제15조 제1항과 제18조 제1항 중 선택적 준수만으로 족한지 여부에 있어서도 해석이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존재한다.

3. 위치정보법의 개정방향

위치정보의 유출·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비밀 등을 보호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위치정보법은 산업육성적 조장법으로서의 성격을 함유한 규제법이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활성화에 따른 사회다각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규제합리화 선상에서 정보프라이버시 보호와 아울러 서비스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우선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위치정보사업자를 범규 의무대상으로 설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는 부분에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위치정보수집 가능성의 확대에 따른 고려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 반면에 이를 일반적·상대적 금지의 해제에 따라 행해지는 명령적 행정행위로서 규제적 허가로 해

두고 있는 것은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진입제한적 장치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위치정보를 활용하는 위치기반서비스 제공이 보유하는 정보프라이버시 위협성에 비추어 이를 신고영업으로 확정하고 있는 것과 견주어 볼 때 구조적인 형평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를 특정하지 않은 채 진입규제만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제3자 제공에 대해 제한함으로써 국내 위치정보 관련업자를 상대적으로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이와 유사한 측면에서 공감이 가는 대목이다. 오히려 위치정보사업자의 허가신청 당시 신고서류 첨부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로 의해하고 있는 위치정보법 제9조 제4항의 경우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이라는 위치정보사업의 개념은 부적절한 정의규정에 해당하며, 이로써 위치기반 관련사업의 재편과 적정규제로의 전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현행 위치정보법은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위하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위치정보를 수집·저장·분석·이용 및 제공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 자원의 결합체’인 위치정보시스템을 주요 설비로 설정하여 진입규제 항목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처럼 전기통신사업법에서의 진입규제와 별도의 것을 두고 있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여부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현행 위치정보법은 이용약관 신고 등을 통해 진입규제와 구별되는 구조적인 사전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주로 위치정보법 위반 시 과징금·행정벌 부과 등 사후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진입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진입규제가 차별화되어야 할 위험요인적 논거가 위치정보의 수집·제공 및 활용 등에 있어 그 차등적 구별에의 설득력을 잃고 있다는 점에서 그 동일화 방향에 대한 고려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술진화와 역무발달에 따른 법규법의 합리

화도 중요한 것이지만, 사업자와 이용자의 정보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정보통신문화로 정착되는 과정 속에서 법제도적 최적사항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 사는 세상이 정보활용 목적에 부합하는 편리하고 안심되는 ‘시스템’ 속에서 그야말로 ‘스마트’ 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말이다. **TTA**

정보통신용어해설

저작권 인증제도

Copyright Authentication System, 著作權認證制度【정보보호】

정당한 저작권의 권리자인지 여부를 국가가 확인해 주는 제도.

정부는 권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한 저작물의 이용과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저작권 인증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며 2011년 상반기에 정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이 탄생할 예정이다.

